


[ 별지 제4호 서식 ]

 책임운영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		<h2 style="margin: 0;">생물소재 분양신청서</h2>	
분양 신청 소재 유형		<input type="checkbox"/> 천연물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생물배양체 <input type="checkbox"/> 종자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전자원	
분양 신청자	성 명		소속기관
	주 소		
	전 화 번 호		전자우편주소
분양목적 및 연구내용			
연구정보	연 구 목 적 (해당시)		
	연 구 기 간 (해당시)		
생물소재 사용(연구) 기간			
신청 수량(점, 주)			
배송 방법		<input type="checkbox"/> 직접 수령 <input type="checkbox"/> 우편배송	
<p>분양 신청하는 생물소재는 국가 자산임을 명심하고 국립생물자원관 「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운영 규정」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다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음 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분양받은 소재는 시험·연구 및 교육 등을 포함하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.</li> <li>2. 분양받은 소재는 제 3자에게 임의로 제공, 이전, 판매할 수 없다.</li> </ol>			

3. 신청자는 분양받은 소재가 국가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분양받은 소재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.
4. 신청자는 분양받을 당시 제출된 분양신청서상의 사용목적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제공자에게 고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.
5. 신청자는 분양받은 소재를 사용하여 결과를 논문 등에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 제공자가 제공하는 소재별 고유번호 등을 재료 및 방법 등에 명기하거나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으로부터 분양받은 사실을 사사 등에 기록하여야 한다.
6. 신청자가 분양받은 소재를 이용하여 특허를 신청하는 등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과 협의하여야 한다.
7. 제공자는 분양된 소재의 안전성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, 신청자는 그러한 보증이나 분양받은 소재의 이용 등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8. 신청자는 소재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하여 국립생물자원관과의 연구협력 강화에 협조하여야 하며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재 활용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
9. 그밖에 명시되지 않은 1호-8호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분양신청자 : \_\_\_\_\_ (인 또는 서명)

**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장 귀하**

210mm × 297mm  
[보존용지(2중) 70g/㎡]

